견책처분취소

소송종류	행정소송	법 원 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	사건유형	공무원신분
원 고	□□□	피 고	◆◆◆◆◆◆◆◆
판결선고일	2017.05.18.	비 고	
사건개요	원고는 2016.3.3. SNS 밴드 '◆◆◆ ◆◆◆ ◆◆◆◆'과 '◇◇◇ ◇◇ ◇◇◇'밴드에 가입하여 총선과 관련하여 야당의 총선 승리 등을 주장하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 사실로 인하여 ●●●●● ●● ●●●●●●●는 원고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경고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06.20.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고 2016.07.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8.31. '기각' 결정되었고, 2016.09.27. 견척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항소)취지	피고가 2016.06.20.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이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2항 제3호는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는 행위'를 금지되는 정치 운동의 하나로 들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게시한 이 사건 글은 게시 당시 정권을 비판하면서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범야권의 통합 내지는 연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여 그 문언 자체만으로도 원고의 정치적인 성향 및 지지 정당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글이 게시된 각 네이버 밴드에는 불특정 다수의 ◆◆◆ 인천광역시 당원 또는 인천광역시 ●● 주민들이 가입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무원은 그 지위의 특수성상 일반 국민보다 더 넓고 강한 수준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므로 원고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이상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도 일정 부분 수인해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2항 제3호는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도록 구분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공무원 신분의 노출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원이기만 하면 위 조항에 열거된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원고는 불특정 다수가 모인 SNS상에서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의무 및 중립의무를 위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교육공무원인 원고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SNS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이 사건 글을 게시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		

	반한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이 볼 때 원고가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직책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을 품거나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에 입법 취지에 볼 때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적 처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교육공무원이자 학교장으로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대외적인 견해 표명에 신중을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 글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특정 당원들을 대상으로 SNS상에 게시되었는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다년간의 공직생활 경험을 통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의 공익상 필요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